

[별표 1의2]

신용정보업, 본인신용정보관리업, 채권추심업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등의 신청서류
(제5조제2항 관련)

1. 신용정보업, 채권추심업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1. 신용 정 보 업, 채 권 추 심 업 영위허가	- 신용정보업, 채권추심업 예비허가신청서 - 정관(안) -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- 발기인 총회의사록(이사회이사록) 사본 - 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-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(출자비율 5%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) -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-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- 출자자가(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대 출자자에 한함)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*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-출자자(또는 주주) 관계가 법 제5조(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)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-합작계약서(합작법인인 경우) -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	-신용정보업,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-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- 재무제표 -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-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 발기인 총회의사록(이사회이사록) 사본 - 출자자(또는 주주) 관계 확인서류 -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-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「외국환거래법」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- 출자자(또는 주주) 관계가 법 제5조(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)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-합작계약서(합작법인인 경우) -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-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-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-임직원에 관한 서류 -임원의 이력서 -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-법 제22조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(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)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	-인력 및 물적시설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·물적시설 포함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-임원(예정자 포함)이력서	-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·회계처리·감사·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-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2. 분할·합병 · 합병 인가	-분할·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-분할·합병 목적 및 사유 -정관변경(안)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분할·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산서 -분할·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분할·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(명칭, 주소 등)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-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	-분할·합병 인가 신청서 -분할·합병 목적 및 사유 -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분할·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산서 -분할·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분할·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(명칭, 주소 등)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-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<합병 후 존속하는	-정관변경(안) -임원(예정자 포함) 이력서	-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-임원 이력서

구분	예비인 · 허가	인 · 허가
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>	-법 제5조, 법 제6조, 법 제22조, 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(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)	-법 제5조, 법 제6조, 법 제22조, 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(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) -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-회계처리 · 감사 · 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
3. 사업양수 인가	-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-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-정관변경(안)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수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산서 -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-임원(예정자 포함) 이력서 -법 제5조, 법 제6조, 법 제22조, 법 제27조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) -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	-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-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-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수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산서 -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임원 이력서 -법 제5조, 법 제6조, 법 제22조제, 법 제27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) -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-회계처리 · 감사 · 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4. 사업양도 인가	-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-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- 정관변경(안) - 재무제표 - 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도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(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) -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-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,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	-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-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- 정관 - 재무제표 - 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도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(일부양도의 경우에 한함) -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-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-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-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
2. 본인신용정보관리업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1.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영위허가	-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신청서 - 정관(안) -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- 발기인 총회의사록(이사회 의사록) 사본 - 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-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(출자비율 5%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	-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서 -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- 재무제표 -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-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 발기인 총회의사록(이사회 의사록) 사본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	외) -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-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- 출자자가(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다 출자자에 한함)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*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-합작계약서(합작법인인 경우) -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-인력 및 물적시설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·물적시설 포함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-임원(예정자 포함)이력서	- 출자자(또는 주주) 관계 확인서류 -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-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「외국환거래법」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-합작계약서(합작법인인 경우) -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-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-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-임직원에 관한 서류 -임원의 이력서 -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-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(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) -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-회계처리·감사·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-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2. 분할·합병·인가	-분할·합병 예비인가 신청서 -분할·합병 목적 및 사유 -정관변경(안)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분할·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	-분할·합병 인가 신청서 -분할·합병 목적 및 사유 -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분할·합병 후 2년간 추정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	산서 -분할·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분할·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(명칭, 주소 등)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-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	계산서 -분할·합병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분할·합병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및 변경계획(명칭, 주소 등)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 분할 후 영위 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 -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<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>	-정관변경(안) -임원(예정자 포함) 이력서 -법 제6조,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)	-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-임원 이력서 -법 제6조,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(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참조) -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-회계처리·감사·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
3. 사업양수 인가	-사업양수 예비인가 신청서 -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-정관변경(안)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수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산서	-사업양수 인가 신청서 -사업양수 목적 및 사유 -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-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-재무제표 -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수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 및 예상수지계산서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	-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 -임원(예정자 포함) 이력서 -법 제6조,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-양수회사의 양수자금 조달계획서	-사업양수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사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 총회 의사록 -본점 및 영업소의 현황 -출자자(또는 주주) 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-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임원 이력서 -법 제6조,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-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-회계처리·감사·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
4. 사업양도 인가	- 사업양도 예비인가 신청서 -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- 정관변경(안) - 재무제표 - 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도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(일부양도의 경우에만함) -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-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계획,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조치내역 및 계획	- 사업양도 인가 신청서 - 사업양도 목적 및 사유 - 정관 - 재무제표 - 2년간의 사업계획서(양도 후 2년간 추정 재무제표,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, 업무범위 및 영업전략 등)(일부양도의 경우에만함) - 사업양도 관련 계약서 또는 예약서 - 사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 총회 의사록 -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절차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- 사업양도후 해산하는 경우에는 청산사무의 추진계획 - 사업의 일부 양도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리계획

구분	예비인·허가	인·허가
		- 예비인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
3. 신용정보집중기관

예비허가	허가
-신용정보집중기관 예비허가신청서 -정관 또는 정관(안) -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-발기인 총회의사록(이사회 의사록(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)) -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공익위원선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) 구성 및 운영(안)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) -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-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) -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) -인력 및 물적시설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·물적시설 포함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-신용정보를 집중관리·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	-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신청서 -정관 또는 정관(안) -재산목록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2년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-발기인 총회의사록(이사회 의사록(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총회 회의록)) -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(공익위원선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포함) 구성 및 운영(안) 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) -영 제21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관리 체계 및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-영 제21조제5항제1호나목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(집중기관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함) -영 제21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원의 구성에 관한 계획 및 업무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(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) -인력 및 물적시설(채용,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·물적시설 포함)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-신용정보를 집중관리·활용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예비허가	허가
자료 1부 -임원(예정자 포함) 이력서 1부 -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(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) - 집중관리 · 활용의 필요성	1부 -임원(예정자 포함) 이력서 1부 -주무부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(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한함) -법인등기부등본 -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- 집중관리 · 활용의 필요성 -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